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8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45252 재산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redacted]지역난방공사

피고, 항소인 1. [redacted]

2. [redacted]

3. [redacted]

4. [redacted]

5. [redacted]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4구합5495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30.

판 결 선 고 2015. 11. 2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8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내역표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한 '처분금액'란 기재 금액의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4. 1. 6. 한 취득세 28,555,430원 및 지방교육세 1,631,73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여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8

재판장 판사 장석조

판사 손삼락

판사 김용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8

처분내역표

순번	피고	처분일	처분금액		정당한 세액	
			재산세 합계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1	성남시 분당구청장	2013.7.10	2,434,330	312,090	2,244,990	287,810
2		2013.7.10	6,179,530	792,240	5,698,910	730,620
3		2013.7.10	18,045,230	2,313,490	16,641,760	2,133,550
4		2013.7.10	21,984,860	2,818,570	20,274,980	2,599,350
5		2013.7.10	52,980	6,790	48,850	6,260
6		2013.7.10	24,921,220	3,195,020	22,982,970	2,946,520
7		2013.9.10	461,501,570	59,546,550	425,608,270	54,915,300
8	성남시 중원구청장	2013.7.10	403,780	51,760	372,370	47,730
9	수원시 영통구청장	2013.7.24	2,668,470	342,110	2,460,920	315,500
10		2013.7.24	13,153,730	1,686,370	12,130,690	1,555,210
11		2013.7.24	23,097,050	2,961,160	21,300,670	2,730,850
12		2013.7.8	14,849,940	1,903,830	13,694,980	1,755,750
13		2013.7.8	77,900	9,980	71,840	9,200
14		2013.9.3	208,358,110	24,512,710	192,153,050	22,606,220
15	수원시 장안구청장	2013.7.8	2,245,630	287,900	2,070,970	265,500
16		2013.9.4	41,988,920	4,939,870	38,723,230	4,555,670
17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2013.7.11	46,798,040	5,999,750	43,158,310	5,533,110
18		2013.9.9	178,636,340	21,039,560	164,927,340	19,403,200
			1,087,697,830	132,719,750	964,560,100	122,297,550